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 대관규약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영등포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한다)의 시설과 부대설비의 대관·대여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약하며, 아트홀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히 이를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과 올바른 공연문화를 정착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관의 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공연 및 관련부대행사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장 및 전시실의 시설·설비·부수장비를 임대·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라 함은 본 규약을 인정하고 아트홀의 대관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대관의 범위)** ① 대관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트홀이 정한 바에 따른다.

1. 기본시설 대관 : 공연장(총 526석)과 그 외 공연관련 시설 및 전시실
2. 부대시설 대관 : 무대·조명·음향·기계·악기 등 관련시설의 공연장비

② 아트홀이 위 대관시설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4조 (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대관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대관 : 매년 상·하반기 개시 40일전에 아트홀에서 정하는 일정한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단, 아트홀이 인정 하는 경우 상·하반기 이후 시기의 대관도 신청, 승인할 수 있다.
2. 수시대관 : 당해년도에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에 별도 절차에 따라 신청·접수를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관은 대관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연대관 : 공연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를 사용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
2. 리허설대관 : 공연 전 또는 공연 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대관

3. 준비대관 : 공연 전 무대 설치를 위한 대관
4. 철수대관 :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
5. 녹음대관 : 음반 레코딩 작업을 위한 대관
6. 촬영대관 : 방송, CF, 영화 등의 촬영을 위한 대관
7. 행사대관 : 위의 상기 목적이외의 기타대관

## 제2장 대관신청

- 제5조 (대관신청)** ① 대관신청자는 대관신청서 ‘공연장 대관신청서와 ‘공연 계획서’ 외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제출해야 한다.
- ②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부대설비사용신청은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로 같음 한다.
- ③ 대관절차, 사용료 납부방식, 부대시설, 환불정책 등 이용자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공개 한다.

- 제6조 (대관신청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아트홀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설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한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의도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대관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을 2회 이상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5. 공연의 내용이나 수준이 아트홀이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 (대관신청 자격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1년 이상 중지시킬 수 있다.
1. 아트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대관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를 연간 2회 이상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3. 대관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중지된 경우
  4. 대관자가 아트홀의 승인 없이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5. 대관자가 아트홀의 승인 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 6. 본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3장 대관승인

**제8조 (대관심의 및 승인)** ① 대관심의를 아트홀의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심사 하되, 수시대관의 경우 부서장이 심사할 수 있다.

② 아트홀 대관승인은 대관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대관신청인에게 서면(대관승인통지서, 대관불가통지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아트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여야 하며 명시된 일자를 어길 경우 아트홀은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아트홀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대관승인 기준)** 대관승인 기준은 공연작품의 내용과 단체수준 극장운영 계획과 방침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신청인의 과거 대관사용 실태 및 차기년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아트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국제적 수준의 공연 및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2. 출연자 및 스텝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3. 제작능력을 인정받는 단체
4. 이전 공연에서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단체와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작품을 공연한 단체에 대해서는 대관을 제한
5. 개인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공연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대관
6. 단체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정기 공연, 공연실적이 많은 공연단체의 순서대로 우선 대관
7. 수시대관 중 경합인 경우 대관심의위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대관승인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본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3. 본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아트홀의 승인 없이 과도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이 부족할 경우
5.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6. 본 규약을 위반한 경우
7. 대관 자가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 제4장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 제11조 (대관료)

- ① 대관자는 대관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해야하며 대관료는 공연 시작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관자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공연 시작일 1일전까지 대관료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대관자는 최초 계약된 대관일정 외의 추가 대관이 필요한 경우 아트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하는 추가대관료는 해당 공연 시작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공연이외의 녹음, 촬영, 행사 등의 대관의 경우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대설비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④ 부대설비 사용료는 대관료 납부시에 함께 납부해야 하며 대관 중 발생하는 부대설비 추가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납부해야한다.
- ⑤ 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도 계약기준 준비대관 전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2조 (대관료 감면)

- ① 「영유아보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영등포구 관내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이 교육의 목적으로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② 영등포구 소재 예술 단체/예술인의 공연/전시 목적 대관 시 기본 대관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일반 행사 시 감면 불가)

## 제5장 변경금지 및 계약해지

**제13조 (양도 및 전대금지)** ①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단, 계약 체결 후 주최, 주관, 후원 등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아트홀의 동의를 얻은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아트홀의 동의 없이 대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아트홀은 대관 사용권을 회수 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된 대관료 등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제14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①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다른 공연과 상치되지 않고 아트홀이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기본대관료의 10%를 할증료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② 아트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할증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③ 대관일정 변경에 따른 대관료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 계약된 대관일자 중에 사용하지 않는 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자를 대관 취소로 간주한다.
2. 계약되지 않은 일자 중 추가사용을 하는 경우는 추가신청으로 간주한다.

**제15조 (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①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공연 시작 45일 이전에 '대관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에 아트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아트홀은 공연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아트홀이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④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대관자가 아트홀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외부 설비를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아트홀의 사전 승

- 인을 받아야 하며 아트홀 무대기술팀의 검토 및 감독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사용 완료 즉시 원상 복귀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 ③ 대관자가 철거 및 원상복귀를 지연할 경우 아트홀은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철거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 ④ 대관자는 아트홀 무대 객석 및 로비 내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 ⑤ 대관자가 아트홀 로비 및 기타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아트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장 입장권 발행 및 판매

**제17조 (입장권의 종류)** 입장권은 유료입장권과 무료입장권(이하‘초대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18조 (입장권의 발행)** ①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 시 아트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입장권 발행 전 대관자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료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아트홀은 대관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모든 입장권은 티켓판매개시일 10일 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단, 아트홀이 인정하는 전산입장권의 경우 검인 과정을 생략한다.
- ③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 ※ 입장권 앞면

1. 공연제목
2. 공연일시
3. 공연장소
4. 좌석번호
5. 입장료(유료입장권에 한함)

\* 티켓 절취선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함.

※ 입장권 뒷면

1. 공연시작 후에는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공연시작 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3. 8세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공연의 성격에 따라 조정)  
(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 될 수 있으므로 입장제한연령을 기재하여야 함.)
4.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여 주시고, 공연 중 좌석이동은 하실 수 없습니다.
5. 입장하시기 전에 휴대폰 및 호출기의 전원은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6. 객석 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사진촬영, 녹음을 하실 수 없습니다.
7. 음식물, 화환, 꽃다발 등은 로비의 물품보관소에 맡기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8. 주차장이 협소하여 유료로 운영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좌석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아트홀의 객석 수는 다음과 같다.

※ 영등포아트홀 공연장 : 총 526석(장애인석 6석 포함)

⑤ 대관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으며 아트홀은 승인되지 않은 입장권을 소지한 관객의 공연장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아트홀이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발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아트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대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교환권의 발행)** 대관자는 교환권 또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시에는 아트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아트홀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 제7장 공연진행 및 스태프회의

**제20조 (공연진행의 정의)**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준비기간을 포함한 공연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21조 (스태프회의)** ① 대관 자는 무대작업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1주 전까지 아트홀의 무대

기술팀이 주최하는 스태프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② 스태프 회의에는 대관자 측 기획·연출·무대감독·조명감독·음향감독 등의 주요 스태프와 아트홀 측의 무대 기술팀, 대관담당자 및 하우스매니저가 참석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아트홀 대관 및 무대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22조 (장치의 설치 및 철거)** ① 대관자는 아트홀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아트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며, 시설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를 철거, 원상복구 한 후 아트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자가 반입하는 모든 장치 및 설치물은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만 한다.

③ 무대에서는 인화성 물질, 용접작업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금지한다.

④ 공연장비의 화환 등의 공연장내 반입은 금지하며, 공연장 입구에 화환 등을 설치할 경우 모든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한다.

⑤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지연할 경우 아트홀은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해야한다.

**제23조 (무대진행 관리)** ①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에 대관 자는 아트홀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아트홀 무대기술팀의 감독 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연진행상의 책임은 대관 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이 지며, 아트홀의 기본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아트홀 소속의 무대감독에게 있다.

**제24조 (공연진행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아트홀의 시설, 설비와 관련하여 아트홀이 요구하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한다.

②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③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하여 대관자는 아트홀의 무대감독과 하우스 매니저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④ 대부분의 공연은 초등학생이상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연성격에 따라 입장연령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아트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분장실 사용관리 준수사항)** 분장실 사용자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분장실에는 음식물(음료 포함)을 반입할 수 없다.
- ② 분장실은 금연구역으로서 흡연할 수 없다.
- ③ 공연종료 후에는 담당직원이 분장실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토록 한다.
- ④ 기타 아트홀 관계직원의 시설사용과 관련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도난사고 등에 대비하여 현금 및 귀중품은 반드시 현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아트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⑥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상의 손상이 발생시에는 아트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26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아트홀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②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트홀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대관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③ 대관자는 아트홀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④ 대관자는 공연장의 부속시설(열쇠, 분장실 집기, 비품 등) 파손 시 손해액을 배상 해야 한다.
- ⑤ 아트홀은 대관 기간 중(공연 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관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아트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 ⑥ 대관자는 아트홀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아트홀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대관자가 부담해야한다.
- ⑦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아트홀이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⑧ 아트홀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대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⑨ 대관 자는 대관공연의 광고, 홍보물 불법 부착으로 인한 해당 관청의 벌금 부과 및 제재 조치로 인하여 아트홀에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8장 보 칙

**제27조 (적용규정)** 이 규약은 아트홀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트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아트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 (규정위반 시의 책임)**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9. 2.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3. 1.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3. 12.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4.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4. 7.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2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4. 8. 21.부터 시행한다.